

2022 부산시민 기후인권 컨퍼런스

Step 4. 부산기후인권회의



기후정의! 부산은 어떻게?

평등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토론 마당

2022. 9. 20. (화) 19:00~21:00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 A동 104호

주최: 사)이주민과함께

주관: 사)식생활교육부산네트워크 이주와인권연구소 한살림부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

□ 목차

■ 주제발표문

기후정의운동의 흐름과 변화

- 김선철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 토론문

▣ 부산의 기후운동 역량 점검하기

- 박상현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 사무국장)

▣ 부산시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이후 과제

- 최영아 (열린네트워크 대표)

▣ 기후위기, 모두의 활동으로

- 이주원 (식생활교육부산네트워크 사무처장)

▣ 기후정의를 위한 새로운 연대

- 정지숙 (이주민과 함께 상임이사)

□ 참고자료

부산광역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기후정의운동의 흐름과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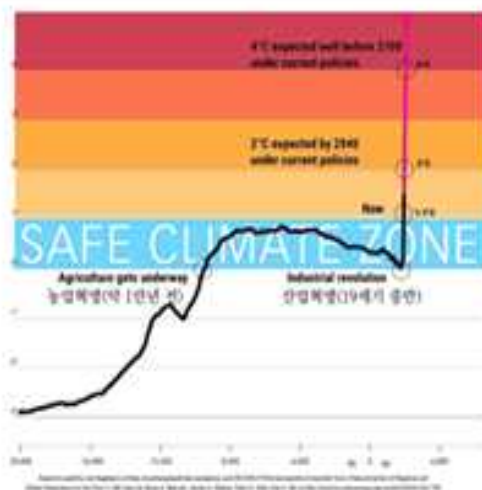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ANOTHER WORLD IS
POSS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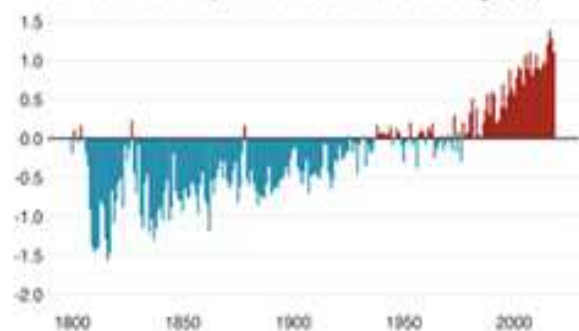
2022-09-20

부산 시민 기후인권 컨퍼런스
김선철(기후정의활동가)

지구 표면 기온 추이



Annual mean land temperature above or below average (°C)



Note: Average is calculated from 1951-1980 land surface temperature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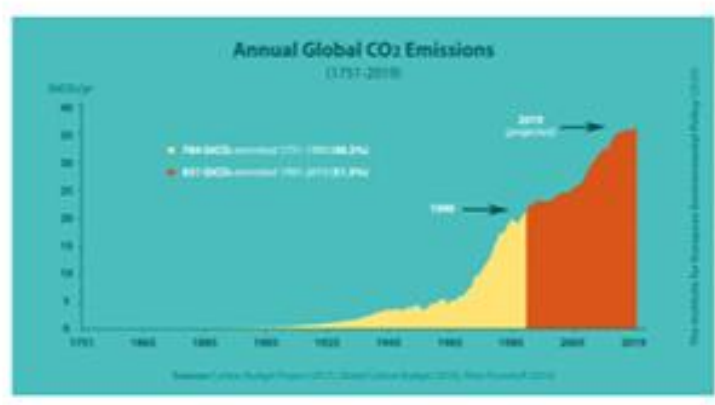
Sourc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3/328



글로벌 탄소 배출 1751-2019

- 1990년대 기후위기 대응 위한 국제적 공조체제 구축되었으나 1990년 이후 배출된 탄소량이 산업혁명 이전 시기부터 1990년까지 배출된 탄소량 보다 많음.
- 1990년대는 냉전 해체와 함께 산자유주의의 글로벌 확산이 본격화된 시기



출처: 유럽환경정책연구소
<https://www.euro-observatory.org/all-our-2-emissions-were-1751-amount-in-the-last-30-years/>

“그린워싱”

GREENWASHING
 Spending more time and money claiming to be “green” through advertising and marketing rather than actually implementing business practices that minimize environmental impact.

그린워싱: 정부나 기업 등이 실질적인 기후/환경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광고나 마케팅을 통해 ‘녹색’ 이미지를 만드는데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쓰는 사업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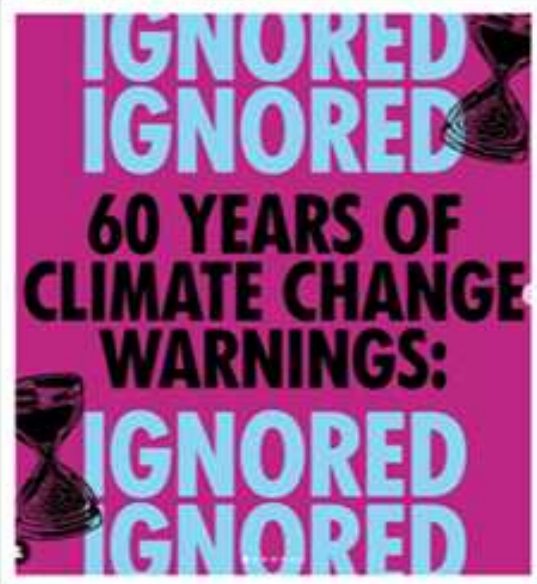


2016년 IPCC 1.5도 보너서 권고로 급부상 기후활동 촉망





멸종반란 2021 8월 캠페인



60년의 기후 경보는 무시되었다



8월 29일 화석연료 기업 별 임구 길 봉쇄 (네덜란드)

기후생태(부)정의



기후생태위기 유발에 모두가 동등한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후생태위기로 인한 피해와 고통도 모두에게 동등이 분배되지 않습니다.

Greta Thunberg
@GretaThunberg

"Stop saying that we are all in the same boat. We're all in the same storm. But we're not all in the same boat."
- @ExtinctionR #FightClimateInjustice

12:12 AM · Sep 14, 2020 · Twitter for iPhone

8,404 Retweets · 292 Quote Tweets · 32.3K Lik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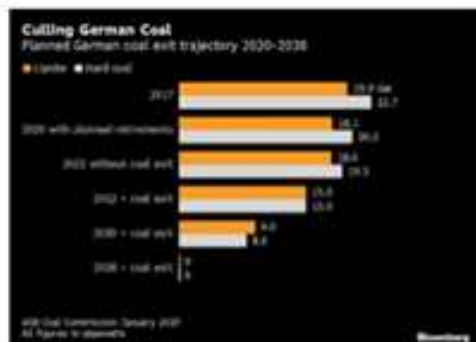
"우리가 같은 배를 탔다 말하지 말라. 우리 같은 배를 타게 있지만 같은 배를 탄 것은 아니다."

기후정의 = 땅을 돌려주는 것
탄소 식민주의를 끝내라

기후정리나 기후 커오스나?

독일 2038년 탈석탄 계획 법제화

Germany's plan to exit coal by 2038 made law



2020년 7월, 독일은 2038년 탈석탄 로드맵 법제화. 그러나 독일 기후단체들은 탈석탄하면서 기후위기 추방을 위한 산업 전환 보조금 지급하지 않길 비판하여 시민운동에서 시위.



#FaceTheClimateEmergency

OPEN LETTER AND DEMANDS TO EU AND GLOBAL LEADERS

This letter has been sent to all EU leaders and heads of state on 16 July 2020.

Of course we welcome sustainable investments and policies, but you must not for one second believe that what you have discussed so far will be even close to enough. We need to face the full picture. We are facing an existential crisis, and this is a crisis that we can not buy, build, or invest our way out of. **Aiming to 'recover' an economic system that inherently fuels the climate crisis in order to finance climate action is just as absurd as it sounds.** Our current system is not 'broken' – the system is doing exactly what it's supposed and designed to be doing. It can no longer be 'fixed'. We need a new system.

by:
Luisa Neubauer
Greta Thunberg
Anuna de Weert van der Heyden
Adelaide Charlier

"우리는 존재론적 위기를 당면하고 있고 이 위기는 무언가를 사거나 새로 짓거나 투자를 통해 빠져나올 수 있는 위기가 아닙니다. [경제위기 극복 위한] 재정확보를 위해 기후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해왔던 경제체제의 '회복'을 목표로 삼는 것은 너무나 여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현재 체제는 망가진 것이 아니라 이 체제가 디자인 되었던 대로 정확히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쳐질 수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2021-05-19

미래를 위한 금요일 셸 주주총회 액션

At Shell's Annual General Meeting #ShellAGM2021, we call on the shareholders of the company and for reparations for those affected by its criminal activities. #DismantleShell #JustTransitionNow #FaceCriminals



모두를 위한 분권화,
사회화된 에너지 민주주의의
실현



화석연료산업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보장



[온실가스 배출량] 피해 받은
공동체의 생태계에 보상금 지급



법적, 경제적, 정치적 수단 등
가능한 모든 수를 동원해 셸 해체



기후위기는 긴급 상황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종 차별주의, 성 차별주의, 비장애인주의, 계급 불평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기는 기후위기를 증폭시키고 기후위기는 역으로 이런 사회경제적 위기를 증폭시킵니다. 기후위기는 단지 하나의 이슈가 아니라 우리의 다양한 투쟁과 방향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후정의를 위한 투쟁을 통해 힘을 모으지만 모두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똑같은 영향과 피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MAPA(Most Affected Peoples and Areas; 기후위기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 지역)는 최악의 기후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민주의, 계급주의, 제국적 투쟁의, 그리고 그밖의 노골적인 방식으로 MAPA의 영향을 악화시켜 만든 불만구의 결과물입니다. 과잉 착취당한 국가들과 사회에서 후진화된 사회집단들은 코로나와 기후를 비롯한 역사상 모든 위기로부터 체계적으로 희생되고 불로 남겨져 생존을 위협당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환경의 보호자들과 노동자들의 지도를 따라 대응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부정직한 체제를 통해 이익을 봤던 가장 부유한 엘리트층에 의한 MAPA에 대한 배상, 불만구의 급격한 배출량 감축, 야망한 복산 캠페인, 부채 탕감, 그리고 기후 재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단지 문제해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정의로운 미래를 위해 한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집단 행동을 통해 만들어진 승리들은 청(소년들이 모두의 친구)나 온 미래, 사람과 지구가 우선이 되는 미래를 위해 부당한 조항을 가결지르는 대다수 투쟁의 필요성을 입증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재앙적인 기후 상황은 식민주의, 수출주의, 자본주의와 같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그래서 대체되어야 할 사회경제적 모델에 기반한 수 세기에 걸쳐 진행된 착취와 억압의 결과입니다. 보자 나라들이 전지구적 온실가스의 92%를 배출하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가 하위 50%에 비해 무려 10배 많은 배출량을 가질하게 하는 체제. 기후위기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과 지역들(MAPA)이 주도하고 갖가지 투쟁과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기후 투쟁을 요구합니다.

기후배상은 자신이 아니라 정치적 권력을 민중에게 되돌려주는 경제적 정의의 과정을 말합니다. 배상은 다름(후, 빛)의 방식이 아니라 선주인, 흑인, 반가부장주의적이며 다양한 후진화된 커뮤니티들이 영웅 되찾는 방식으로 기후위기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공동체들의 기후 정의를 피해야 할 것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 보, 기술, 정부, 법률, 정치 개혁의 재분배, 그리고 많은 경우 사회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 방향은 불만구에서 불만구로 상층에서 아래로 향해야 합니다.

기후투쟁은 계급투쟁입니다. 대부분 부유한 백인, 이성애자, 남성으로 구성된 불만구의 지배 계급, 기업과 정부는 식민주의, 자본주의, 가부장주의, 백인 우월주의, 착취를 통해 이익을 취하며 지구와 그 거주민들을 아무런 고려없이 파괴해왔습니다. 그들은 발전, 혹은 끊임없는 '경제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계획적으로 불만구의 생계와 민중을 희생시켜왔습니다. 그 와중에 노동자들은 그들 자신을 파괴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국제 기후정의운동의 역사

- 1982 미국 워렌 카운티 투쟁과 1991년 '유색인종 환경정의 리더십 회의'의 '환경정의 원칙': 환경과 사회정의의 결합
- 2002 발리 기후정의의 원칙
 - 8월 요하네스버그 지구정상회의 준비 위한 발리 회의에서 남반구, 선주민, 기업감시 단체들이 연대체 구성하고 전문 용어와 대기업과 북반구 정부의 이해를 비판하며 인권과 환경정의 관점을 도입해 기후변화 대응에 '인간적 얼굴'을 입히자는 취지로 작성
 - 기후변화 대응에서 정부와 기업의 책임과 기후변화로 영향 받은 공동체들의 당사자성과 권리 확립
 - 탄소배출권 거래나 탄소 포집 저장 등 시장주의적, 기술적 해법 반대 + 비용의 외부화 없는 해법 주장
- 코차밤바 민중 협약
 - 2008 세계 금융위기, 2009 코펜하겐 COP15의 실패, 그 대안으로 개최된 2010 기후변화와 대지의 권리에 대한 세계민중회의에서 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 지향성, 발전국들의 생태적 빚과 발전도상국 적응 위한 빚 포함한 협약
 - 자연과 인간, 모든 생명이 깨끗한 환경에서 존중 받고 살 권리 + '국제 기후 및 환경정의 사법재판소' 설립 요구
- 2016년 키스톤 파이프라인 반대하는 선주민-연대자들의 스탠딩 락 투쟁과 미국의 그린뉴딜 운동
- 2018년 '미래를 위한 금요일' 글로벌 학교파업과 유럽과 북미 중심 기후운동의 급진화(멸종반란, 썬라이즈무브먼트 등)
- 2020년 이후 급진 기후정의운동과 남반구 연대 강화: MAPA, Pass the Mic 등



2019년 기후위기비상행동 3대 요구

- 1)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비상선언을 실시하라
- 2)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
-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독립적인 범국가기구를 구성하라





2021.08.17
SK에너지 "탄소 중립 휘발유 판매한다"



2021 사회적 책임
 SK에너지
 2021 사회적 책임
 SK에너지
 2021 사회적 책임
 SK에너지



경향신문 2021.11.08
**여러 '기후선언' 내놨지만...
 한국 올해도 기후위기대응지수 최하위권**

말과 행동이 다른 '탄소중립' 선언

신규 석탄화력사업, 탄소 예산 3배 훌쩍 넘겨

정부 '그린뉴딜' 지원에 너도나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장 나선 대기업

특혜와 난개발이 '그린뉴딜'이라고?

SK, 22개 회사 신규편입...그린뉴딜 영향 대기업 계열사 큰 폭 증가

환경단체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탈탄소 역행"





기후'정의'에는 인간만 포함되나요? - 동물해방이라는 가능 세계



발행 2022년 8월 31일 편집 2022년 8월 18일 크기 360

동물권 활동가로서 기후정의운동을 하며 느꼈던 감정들을 글로 풀어 보았습니다. '기후정의운동'이라는 거대한 연대의 테이블에서 인간동물뿐 아니라 비인간동물의 참여가 함께 이야기될 때 우리의 상상력이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기후정의에 대한 퀴어한 실천

가중되는 기후위기,
이주여성농업노동자, 폭방촌여성



924 기후정의행진 3대 요구

- 1) 화석연료와 생명파괴 체제 종식
 - a. 화석연료 생산, 유통, 소비의 빠른 중단
 - b.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 c. 화석연료 기업들의 이윤 통제와 에너지 공공성 강화
 - d. 지구적 한계를 넘어선 채굴주의가 모든 것을 파괴하는 현실로부터 정의로운 전환
- 2) 모든 불평등을 끝내야 한다
 - a. 기후위기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하고 부정적이다
 - b. 기후위기의 책임과 피해가 누구에게 어떻게 전가되는지 직시
 - c. 근본적 해결책은 사회적 평등과 정의의 회복
- 3)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는 더 커져야 한다
 - a. 이미 시작된 기후재난의 최일선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 b. 기후위기 시대에 고통받는 주거빈곤층, 청소년, 지역주민, 농민, 노동자, 사회적 소수자들이 당사자
 - c. 자본과 기업,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정부와 전문가들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기후정의 출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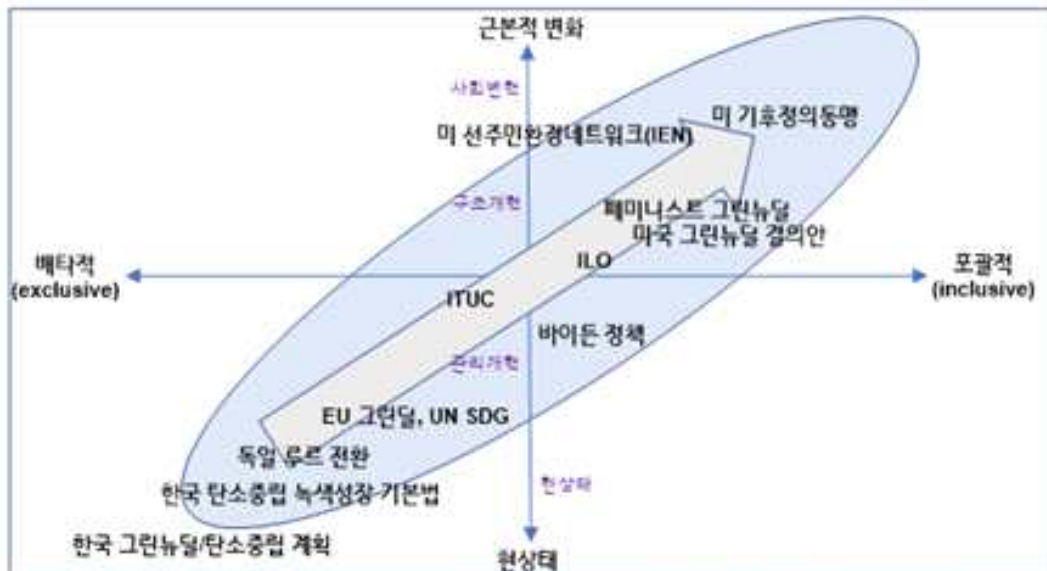
정의로운 전환

정의로운 전환은 후속 경제에서 재생적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와 경제를 구축하는 통합적 비전이자 장소(공간)를 기반으로 하는 원칙, 프로세스 및 실천입니다. 이것은 생산 및 소비의 사이클이 폐기물을 얻는 방식을 따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전환 자체는 정의롭고 공평해야 하며, 과거의 피해를 시정하고 배상을 통해 미래의 보다 평등하고 새로운 권력 관계를 창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환의 과정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그 결과도 정의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의로운 전환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지와 더불어 거기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Source: Climate Justice Alli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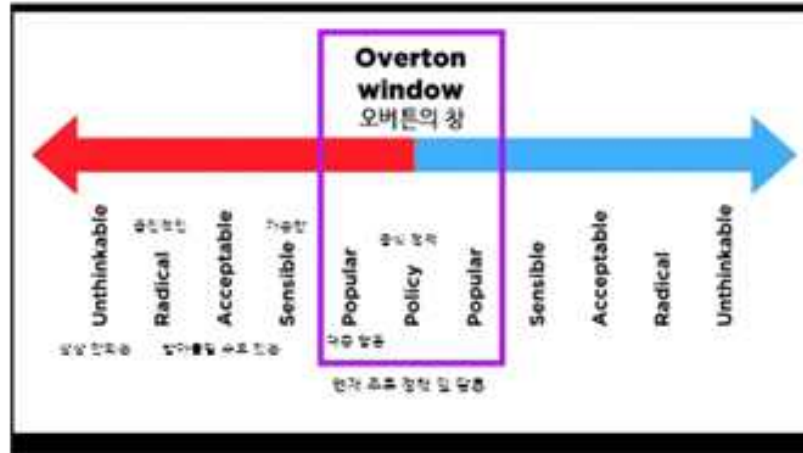
변화의 폭과 수혜 범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지도



Just Transition Research Collaborative. 2018. "Mapping Just Transition(s) to a Low Carbon World." UN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Rosa Luxemburg Stiftung, and University of London Institute in Paris. 기후포럼 연구실

오버튼의 창

어느 한 시점에서 주류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요구/주장/정책의 범위



오버튼의 창은 사회적 요구의 범위를 나타내며, 이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는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습니다. 오버튼의 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변화의 지표가 됩니다.

The Guardian
Sat 25 Sep 2021



인스타그램: gretathunberg



"I mean in one way we're all climate deniers because we're not acting as if it is a crisis"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 기후변화를 부정론자입니다. 위기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의 기후운동 역량 점검하기 : 한계와 가능성을 중심으로

박상현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 사무국장)

1. 마키아벨리와 기후위기?

이탈리아의 정치 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15세기, 16세기 혼란스러운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삶을 살았다. 당시 프랑스나 독일은 통일된 국가 형태로 진전되어 갔던 반면 이탈리아는 로마 제국 멸망 후부터 지속된 국가 분열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군주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군주에게는 ‘여우의 교활함’과 ‘사자의 사나움’의 기질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였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이라는 책을 통해 권모술수의 사상가라는 악명을 얻었으며, 아직까지도 논란이 지속 중에 있다. 이 토론문에서 마키아벨리의 사상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마키아벨리의 주장에 일부를 차용하여 논거를 주장할 예정이다.¹⁾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포르투나(fortuna)’, ‘비르투(virtu)’이다.

‘포르투나’는 로마 신화에 전하는 운명의 여신을 의미하며, 운명·행운·기회·금수저 등등 신을 포함한 자신을 제외한 외부적 힘을 뜻한다. 반면에 ‘비르투’는 도덕·미덕·가치·용기·역량 등 다양한 의미가 있으며, 그리스어 ‘아레테(arete)’의 라틴어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마키아벨리 이탈리아의 혁명성은 ‘신의 의지’를 지상에 구현한다는 중세의 도덕적 정치 관념에서 벗어나 그것을 ‘인간의 주체적 활동’²⁾으로 정치를 이해했다는 점에 있다. 마키아벨리는 외부요인인 ‘포르투나’에 의지하지 않고, 내적인 역량인 ‘비르투’를 모아내고 결집시키는 정치 체제를 원했던 것일까? 마키아벨리의 문제의식은 현재의 상황과도 연결된다.

현재 인류는 그 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기후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하지만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도 탄소자본주의에 기반한 체제를 전환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지속해나가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부산의 기후행동은 인민(people)의 의지를 모아서 이 상황을 막아낼 수 있을까?

2. 구조개혁과 체제전환

1980년 대처와 레이건의 승리로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가 완전히 국제 표준으로 등극하기 전 영국, 프랑스, 칠레를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체제에 대한 전투와 격돌이 있었다. 이 전투와 격돌의 결과는 이미 알고 있지만, 신자유주의가 헤게모니를 잡기 전에 백기를 들어버린 중도좌파정당과는 달리 탈자본주의 구조 개혁 노선을 추구한 세력들이

1) 마키아벨리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나, 이탈리아 출신 아우토노미아 사상가 안토니오 네그리의 해석과, 정정훈(2011), 『군주론, 운명을 넘어서는 역량의 정치학』, 그린비를 참고했다.

2) 정정훈(2011), 『군주론, 운명을 넘어서는 역량의 정치학』, 그린비, p.58

존재했었다. 구조 개혁 좌파'라고 불린 이들은 보통 선거권 도입으로 열린 국민 국가 내부의 대의 민주주의 형식을 존중하면서 자본주의의 극복이라는 궁극 목표의 실현을 끊임 없이 고민했었다.³⁾ 그들의 주된 고민은 구조 우선 자본주의의 핵심 구조인 생산 수단의 소유, 경영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었으며, 대중 운동을 발전시켜 계급 세력 관계 자체를 바꾸는 것이었다.⁴⁾ 이탈리아의 잉그라오 좌파의 브루노 트렌틴은 구조개혁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

대안적 정책은 반드시 체제의 질적 변화를 낳을 수밖에 없다. 좀 더 합리적인 자본주의가 아니라 이행기 경제 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법령이 아니라 대중 행동,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 통제, 전통적인 대의 기구들 사이의 새로운 관계, 새로운 형태의 기층 민주주의 등을 통해 투자의 새로운 할당, 오늘날 노동조합운동이 지지하는 종류의 정책 전환 등을 집단적으로 결정하게 되다면, 누구도 이것을 가리켜 단순히 구조 조정이나 자본주의의 합리화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윤을 지배하는 자본의 권력 자체가 도전받게 될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탈리아 자본주의는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⁵⁾

영국 노동당의 토니 벤을 필두로 한 대안경제전략(AES)과 루카스 플랜, 지방사회주의를 실험했던 런던광역의회(Greater London Council), 연기금 사회주의를 실험했던 스웨덴의 마이드네르 플랜, 자본 파업에 맞선 살바도르 아옌데의 사이버신 계획(Proyecto Cybersyn) 등 여러 각지에서 신자유주의 대응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계획을 실험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들은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막지 못했고, 철저히 패배했다.

2022년 9월 24일. 기후정의와 체제전환을 외치는 행진이 시작이 될 예정이다. 2022년에 '체제 전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혹은 과거의 변혁/구조개혁에 생애를 추가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지금의 체제전환에 대한 담론이 과거의 구조개혁과 무엇이 달라졌을까? 1960~1970년대의 변혁/구조개혁에 비해서 구체적인 상(想)은 어떠한지 따져 물어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의 '체제전환'이라는 구호가 단순히 사람들을 가르치는 용도가 쓰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3. 시스템적 사고로 부산의 기후 운동 질문하기

로마클럽은 1970년 3월 세계 25개국의 과학자·경제학자·교육자·경영자들이 창립한 민간 단체이다. 로마클럽에서 1972년 『성장의 한계』라는 책이 발간이 되었다. 『성장의 한계』의 공동저자들은 지속 불가능한 패턴, 즉 인구와 소비가 계속 늘어나면 생명체를 지탱하는 지구 생태계와 사회시스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것⁶⁾이라고 경고했다. 책이 발간된 이후 전세계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지만 시스템의 전환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3) 장석준(2011), 『신자유주의의 탄생』, 책세상, p.13

4) 장석준(2011), 『신자유주의의 탄생』, 책세상, p.13

5) 장석준(2011), 『신자유주의의 탄생』, 책세상, p.62

6) 도넬라 H. 메도즈(2022), 『ESG와 세상을 읽는 시스템 법칙』, 세종, p.19~20

공동저자인 도넬라 H. 메도즈는 오늘날 환경, 정치, 경제와 관련해 세계가 직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시스템 사고’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시스템’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시스템은 “사람이나 세포, 분자 등 시간이 지나며 고유한 행동 패턴을 보이도록 연결된 일련의 대상”으로 메도즈는 정의한다.⁷⁾ 시스템은 요소, 상호연관성, 기능 혹은 목적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⁸⁾ 또한 모든 시스템의 기초는 저장(stock)이며, 저장은 시간이 지나며 쌓인 정보나 물질의 양, 저장량, 축적량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저장은 유량의 작용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⁹⁾ 시스템적으로 사고를 한다는 것은 이러한 요소, 상호연관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사고를 한다는 뜻이다.

메도즈가 제시한 틀에 따라서 부산의 기후 운동의 시스템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메도즈의 시스템 사고를 통해 부산의 기후운동에 대한 질문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 |
|--|
| 1) 부산의 기후운동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2) 각 요소들의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효과를 산출하고 있을까?
3) 부산의 기후운동의 역량(stock)은 소진되고 있는가? 아니면 축적되고 있는가? |
|--|

부산의 기후운동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4. 잠정적 결론

각 단락의 맥락은 서로 독립적인 내용 같아 보이지만 서로 이어져있다. 마찬가지로 기후 운동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각 연대체는 따로 떨어져 있지만 공동의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올바른 기후운동의 형상은 어떤 것일까? 각자의 입장에 따라 생각하는 상(想)은 다르지만 범박하게 정의를 한다면, ‘제도권과 비제도권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표현하고 싶다. 상호 간의 길항작용이 기후운동의 역량(stock)을 소진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후운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부산뿐만 아니라 기후운동을 하는 모든 곳에서 고민해야할 문제일 것이다.

7) 도넬라 H. 메도즈(2022), 『ESG와 세상을 읽는 시스템 법칙』, 세종, p.28

8) 도넬라 H. 메도즈(2022), 『ESG와 세상을 읽는 시스템 법칙』, 세종, p.39

9) 도넬라 H. 메도즈(2022), 『ESG와 세상을 읽는 시스템 법칙』, 세종, p.49~50

부산시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이후 과제

최영아 (열린네트워크 대표)

1. 부산시 탄소중립기본조례 발의
 - 공청회, 토론회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
 -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논의가 없는 상태
 - 환경단체 등과도 논의가 없었음
 - 부산시에서 조례안 만들어 입법 예고를 위한 의견제출서 기간을 명시함
 - 4/13~5/3 입법 예고
 -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 환경연합과 참여연대에서 의견서를 제출
 - 그러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음.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내용

-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 예고기간 : 2022. 4. 13. ~ 5. 3.(20일간)
- 예고방법 : 부산광역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 의견제출 : 부산참여연대
- 제출의견 및 조치내용

제출된 의견		조치내용
제출자	내용	
부산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종민, 이종진, 이호철)	1. 3조 시민의 책무, 4조 시의 책무에 사업자, 시민뿐 아니라 노동조합 또는 노동단체를 추가해서 본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참여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반영> · 조례안 제2조제5호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사업자, 노동자 포함)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토록 하고 있고, · 시와 시민의 책무에 특정 단체를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2. 6조 3항, 10조 2 '지역비전' 용어가 모호하므로 지역비전에 대한 용어 정의가 필요합니다.	<미반영> · 조례안 제6조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으로 한다고 명시됨
	3. 7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구체적 내용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미반영> · 탄소중립기본법 제11조제2항에 구체적 내용 명시되어 있음
	4. 9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3항 '위원장은 경제부시장과 제5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는 조항 중에서 경제부시장 이외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아닌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반영> · 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제3항에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하는 조항 준용함

제출된 의견		조치 내용
제출자	내용	
부산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종민, 이종건, 이호철)	5. 7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인 경제부시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조항은 경제부시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을 위원장 직무 대행으로 하는 것이 아닌 '2명의 위원장중 1명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해야 합니다.	<미반영> · 조례안 제9조제7항의 경우 위원장 2명 모두 부재시 경제부시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조항으로 · 위원장중 1명이 부재시는 당연히 다른 공동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함
	6. 14조 4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의 지명이 아닌 '위원장의 지명과 신청하는 위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일부반영> · 위원들의 참여희망 분과 신청받아, 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 적정 인원(10여명)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토록 일부반영
	7. 31조 탄소중립 지원센터 대상기관이 될 수 있는 단체가 협소하므로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미반영>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각 호 기관·단체를 준용하여 해당기관 정하였음

2. 부산시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과정

- 도시환경위원회(해당 상임위) 탄소중립소위원회 시급히 꾸림
- 시간이 급박하여 활동이 부족할 것은 알지만 조례를 만들기 위함
- 토론회 진행
- 5월 11일 자문위원회 꾸림
- 5월 24일, 5월 30일 자문위원회 개최
-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정의로운전환 등과 함께 5명으로 구성
- 자문내용을 토대로 기후대기과와 접촉, 실갱이
- 기후위기 사회안정망 마련 조항
 - : 시에서는 법으로 가능하다고 함
 - : 불평등 심화지역에 대해 정부의 책무성이 아닌 지역의 시장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의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
 - : 여러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시의 답

<수정 제안안>

-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례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 탄소중립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안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 제9조 제2항에 “40명 내외의”를 “50명 이상의”로 수정하고

- 제9조 제5항을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신설하며,
- 제10조 제1항 제5호에 “관한”을 “관련된”으로 수정하고,
- 제10조 제2항을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신설하고,
- 제14조 제2항에 “위원장이 지명하는”을 삭제하고,
- 제15조 신설,
- 제23조 제1항 “작성하여야 한다”를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 제25조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을 “정의로운전환 등”으로 수정하고 제1항을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신설함.
- 제27조 제5항 및 제6항을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신설하여
- 본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 지금 제안설명 드린 수정 부분 외에는 원안과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회는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0조제1항제5호의 행정계획과 관련하여,

탄소중립법 시행령 [별표1] 중·장기 행정계획의 종류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시기본계획”과 동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추가되도록 시행령 개정예 부산시장은 적극 임해줄 것과

조례안 제34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직제개편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수립·시행을 총괄하는 기획 담당 실장·본부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합니다.

○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중위원회는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 근거없이 40여명으로 만들어짐

- 아쉬운 점

특히, 이행추진체계를 만들지 못함 (직제 개편과 연동이 되어야하는 부분이라 회기 중에 담을 수가 없었음)

3. 결론

기후재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

장애인이, 노인이, 아동청소년이, 여성이, 이주민이 안전하다면 모든 시민은 안전하다는 바탕 아래 기본적인 사회안정망을 위해 부산시는 노력해야 함

흩어진 사업이 아닌 부산시 도시 전체를 총괄하는 계획에 필수적인 것이 기후재난에 대한 사회안정망이고 인권

기후위기, 우리 모두의 활동으로

이주원 (식생활교육부산네트워크 사무처장)

기후정의 운동에서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가려진 ‘개인’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사회 운동’은 ‘특별한’ 누군가가 하는 운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회 운동이라고 정의되는 관념부터 운동의 방식이 ‘특별해야만’ 할 수 있는 것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운동은 참여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무겁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 일정부분은 개인이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운동 환경으로 인해 개인들과 점점 분리되고 있다. 기후위기라는 모두의 위기 앞에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사회의 전환을 이야기한다. 사회의 전환을 말하는 큰 흐름에 ‘개인’이 정말 포함되어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후정의 운동에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담론이 지배적이다. 그 전환은 단순한 전환이 아닌 급진적인 전환이다. 사회 전환이라는 것은 사회 시스템의 변화이지만, 개인에게 있어서는 본인이 사는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고 낯설게 삶의 방식이 바뀌는 문제이다. 개인들은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삶의 방식의 전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을까? 심각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기후운동에 결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 우리는 개인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운동가적 관점에서만 개인들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생각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다를 수도 있고 인식은 하지만 자신이 위치한 곳의 문제가 더 시급하여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다. 대신 싸워줄 이가 있으니 책임을 미루는 것일 수도 있다. 구조적으로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고 싶지만,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를 수도 있다. 우리는 ‘개인’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는가? 자문해 봐야 한다.

누군가가 조직한 ‘기후운동’에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정한 시기에 그 곳에 있을 때만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 있을 때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습관으로 굳어진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흩어져 있는 ‘기후정의’운동을 모아 하나의 큰 힘으로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서 있는 위치, 공간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활동(실천)들로 그동안 굳어진 습관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꾸는 방법을 서서히 배워 나가야 한다. 전환은 한순간에 ‘짠’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도 전환의 과정 중에 있고 전환이 완결되지 못할 수도 있다. 전환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고

자 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이때 개인들은 전환에서 비켜난 존재가 아닌 과정 안에 존재해야 한다. 미래의 완결된 전환 후 초대할 손님이 아니라 지금-여기 함께할 동지이다. 특별히 마음을 내어서 간 ‘그-장소’에서가 아니라 ‘지금-여기’에서의 크고 작은 시도들 속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이 축적되어야만 함께 전환을 맞이할 수 있다. 개인들의 삶에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성공의 경험이든 실패의 경험이든 개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환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개인들의 관점과 필요에 근거한 자발적인 행동, 우리 모두의 ‘활동’이 필요한 이유이다. ‘지금-여기’ 기후정의 실천 활동들은 개인들의 다양한 개성을 반영하고 개인들의 필요에 근거한 활동들이 되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공통성은 유지하는 활동들이어야 할 것이다. 이분법적으로 이 활동은 옳고 저 활동은 그르다는 이분법적 인식을 버려야 한다. 이 활동은 효과가 있고 저 활동은 효과 없다는 판단은 일단 보류해야 한다. 개인들의 자발적 행동의 경험 그 자체, 시도 자체가 우선되어야 한다.

기후위기의 원인은 개인보다는 거대 기업과 거대 국가에 있기 때문에 개인의 실천보다는 거대 기업과 거대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물론 기후위기의 책임은 거대 기업과 거대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한다. 하지만, 개인이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개인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을 효과가 없고 무의미하다고 보는 것은 개인의 기후위기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구체적 예를 들어 개인이 발생시키는 탄소 배출량보다 기업이 발생시키는 탄소 배출량이 훨씬 크다. 그래서 개인의 탄소 배출 줄이기 실천은 아무 효과도 없고 의미도 없다고 하는 논리 등이다. 현대의 편리한 사회에 살면서 기후위기에 책임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현대 삶의 방식 자체는 기본적으로 생태 파괴의 방식이므로 작든 크든 책임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실천에 대한 효과성만을 부각하는 분위기는 기후위기에 대한 비판 및 낙관적 ‘집단 정체성’을 부여할 여지가 크다.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의 위기라는 인식보다는 일부의 누군가의 위기라고 보는 인식과 개인의 실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인식으로 계속 ‘개인’을 분리할 뿐이다. 개인의 대응 전략이 전환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이 느리고 크지 않다고 해서 개인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개인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작은 시도로 대안 삶의 방식을 경험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이런 시도의 시행착오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전환을 위한 이야기들이 더 풍부해질 것이다. 개인의 기후위기에 맞서는 작은 시도들은 효과성의 유무를 떠나 시도하는 행위에서 생겨난 감정들, 감각들, 이야기들은 그 자체로 힘을 가진다. 그 힘들은 기후위기의 전환 과정에서 삶의 적응력을 높여주는 큰 자산이 될 것이다. 개인들의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들과 개인들과의 연합은 주류 운동의 시각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일 것이다. 실제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 한계점에 집중해야 하고 그 한계점을 넘어서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기후정의를 위한 새로운 연대

정지숙 (이주민과 함께 상임이사)

실천이란 무엇인가? 요약하면 실천은 연대 속에서 운신하고 행위하는 것이다(Praxis ist Sich-Verhalten und Handeln in Solidarität) - 가다머

<이주민과 함께>에서 기후위기를 왜?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많이 받은 질문이다. 기후운동이 환경단체의 몫으로 인식 되고 있는 현재 부산 상황을 반영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기후운동과 인권운동의 연결과 연대. 설익은 시도인가, 선부른 도전인가? (기후정의운동의 흐름을 모르던 상황에서) 기후·인권활동가 네트워킹을 기획하며 염두에 두었던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과 ‘부산인권정책포럼’ 둘 다 반응이 시큰둥했다. 한쪽은 ‘우리도 인권이나 노동, 사회 각 부문에 영역을 넓히는 것에 동의, 그런데 기후행동 네트워크에 참여하면 되잖아?’는 것이었고 다른 한 쪽은 ‘응, 열심히 하네. 응원할게’였다.

토론을 준비하며, 기후위기와 인권 의제의 연결을 위한 이 프로젝트를 기존의 기후운동, 인권운동 네트워크와 함께하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 궁금해졌다. 논문, 토론문, 선언문 등을 뒤지며 기후운동의 등장과 흐름을 읽었고, 현재 부산의 기후운동 양상과 맥락에 대한 파악이 필요했기에 활동가들을 인터뷰했다.¹⁰⁾

기후운동의 인권의제화가 어려운 이유

첫째, 기후위기를 환경이슈 중 하나로 파악하는 시각이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신공항건설 현안 대응 할 일이 엄청 많은데 갑자기 기후위기가 부상하는 바람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운동도 유행을 타나 봐요. 당장 코 앞에 닥친 고리2호기 주민의견 수렴 의견서 제출 캠페인도 급한데...”

인권단체들도 비슷한 생각이리라. 기후변화? 환경문제 아닌가? 어찌면 그 말이 사실일 수 있겠다. 가장 마지막까지 이 의제를 잡고 갈 책임이 자의반 타의반 부여되어 있을 테니까. 적어도 현재 상황으로는.

둘째, 인권영역에서 기후위기를 자기문제화 하지 못(안)하고 있다.

10) 이를 토대로 만든 토론문은 내 관점에서의 해석과 분석이므로 진실에 가 닿기에 부족하며 틀릴 수 있다. 실천영역에서의 균열과 논쟁을 포함하고 있기에 민감하며 도전적이다. 종합토론을 통해 수정되고 보완되기를 바란다.

연대는 '공동성'에서 시작되며 '함께'를 받아들이는 것은 드러나는 현상이나 징후, 결과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할 때 가능하다. 기후위기는 모든 인류, 나아가 온 생명들에게 재난으로 닥쳤지만 인권단체들이 기후위기를 자신의 의제로 받아들이고 실천하지 못하는 현실적, 심리적 걸림돌이 있어 보인다. 주로 그것은 역량의 한계, 고유 활동과 당면 현안의 시급성, 자기 문제화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들이다.

또한 인권, 노동 단체들처럼 연대와 투쟁의 대상이 비교적 명확한 활동을 해 온 사람들에게 개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담론이고 스스로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복합적·중층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결과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기후운동이 어렵다. 더불어 그동안 기후운동이 자원절약, 쓰레기 줄이기, 에너지 절약, 친환경 소비 등 개인적 실천 영역이 부각되었고 정책차원에서 대형 토건사업 반대 및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등을 환경운동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기후정의 담론의 성장은 반갑다. 특히 코로나19와 잦은 기후재난에서 경험한 사회적 불평등에 자극받은 점이 크다고 본다.

셋째, 기후운동 내부에서 '기후정의'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토론과 합의가 부족하다. 기후위기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다른 인식이 있다. 크게 구조적 접근과 현상적 접근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체제 전환을 외치는 기후정의는 분명 구조적 문제에 무게 중심이 가 있다.

기후위기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내재적 모순에 기인하며, 최소한 현 세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독점자본에 의한 세계적 분업구조, 그 결과로 만연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구조, 값싸게 착취되는 노동력, 상품과 자본과 노동력의 이동이 환경착취와 인간 착취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자원절약, 환경보호, 그린뉴딜과 녹색성장과 같은 활동은 자본주의 위기관리에 불과하며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류 기후운동 진영에는 이러한 흐름과 방향성에 불편함이 있는 것 같다. 체제 전환의 정체가 무엇인지, 사회주의 정당 건설에 도구로 호명된 것은 아닌지, 녹색 자본주의나 급진 그린뉴딜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되긴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논쟁을 들으면 '선량한 녹색시민'들은 화들짝 놀랄 지도 모르겠다. 다른 세상은 가능할 수 있으나 다른 세상에 대한 그림은 천차만별이다.

넷째, 활동방식과 감수성의 차이에서 오는 저항이다.

“코끼리와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어업이주노동자 인권 활동을 메이저급 환경단체와 함께 진행한 사람의 말이다. 자칫하다 밟혀 죽을 것 같았다고 한다. 추진력과 무례함, 섬세함과 답답함, 구태와 연륜, 든든함과 주눅 드는 느낌은 동전의 양면이다.

“연대활동을 열심히 해도 주목받는 건 인지도 있는 큰 단체예요. 회원조직이다 보니 자기성과를 챙겨야하는 것 이해하지만 섭섭할 때가 있어요.” “운동단체 또한 우리를 대상화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미래세대를 위한 행동이라지만 정작 청년인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 영혼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반면 “개인과 회원 수백명 조직이 같을 순 없잖아요. 구성원의 생각과 이해관계도 워낙 다양하고.... 무시하고 건너뛸 수 없으니 느리고 보수적으로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낮은 수위라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저변을 확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가장 많은 책임을 지고 욕도 우리가 제일 많이 먹거든요.” 모든 일에는 자기 이유가 있다. 다름이 균열이 아닌 다양성으로 빛날 수 있을까?

연대는 1차적으로 신뢰와 동질감에서 비롯된다. 동질감은 이해관계일 수 있고 정서적 유대에 기반 하기도 한다. 때문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를 꾸릴 때 제일 유대감이 높은 사람이나 단체부터 시작하여 연대를 확장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새로운 의제가 등장했을 때, 더욱이 기후위기처럼 포괄적이고 층위가 다양할 때는 누구와 어떻게 연대해야 하는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넷째, 연대의 과잉이 불러온 연대의 결핍이다.

기후운동에서 연대는 과잉과 결핍의 조건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 같다(사실 시민사회 운동이 대부분 그렇지만)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에 참여한 단체는 60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단체가 있고, 뜻이 좋으니,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 이름만 걸어둔 단체도 있다. 더러는 자기 단체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고 있는 곳도 있었다. 부족한 역량을 품앗이로 채우는 오래된 연대의 관행, 습관은 오히려 연대의 역량을 끌어내리지 않을까? 비슷한 의제로 여러개의 포럼, 네트워크, 연대가 만들어지고 무엇보다 일이 너무 많다. 자기단체가 주관의 책임을 진 연대가 아니면 참석할 시간도 부족하다.

연결과 연대를 위한 과제

“채굴 대 반채굴 논쟁에서 인권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조효제)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다. 어느 편에도 설 수 없는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

기후정의는 누가, 무엇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기후위기를 이야기하고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지 묻는 비판적 담론이자 사회운동이며 핵심은 체제전환이다. 그러나 전환의 방법과 목적지는 저마다 다른 것 같다. 어떤 이에겐 체제의 전복과 변혁이고 다른 이에겐 현실개선과 긍정적 변화가 전환일 수 있다. 수준과 수위를 맞추는 연대를 큰 구

조와 소소한 생활세계 속에서 입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반 모순을 한 번에 뒤엎는 혁명은 가슴 뛰는 도전이지만 불평등의 당사자인 사회적 약자, 소수자 당사자를 소외시킨 혁명은 정의롭지 않으며 성공 가능성도 낮다. 돌봄과 연대가 필요한 사람들은 안정적인 시스템과 일상성의 유지가 중요하다.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서는 사람 대다수가 사회 계층적으로 결코 기득권이 아닌 이유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극우 보수에 투표하는 이유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미국에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주요세력이 민주당의 엘리트 진보론자들의 위선에 몸서리쳐하는 지방의 블루칼라들이었다. 한국은 다를까? 앞선 기후위기와 재난불평등 컨퍼런스에 드러났듯이 가치충돌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의로 호명되는 ‘돌봄, 연대, 순환’의 비전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현실세계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섬세한 설계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의 인권 의제화는 막 시작되었고 그 목적이 기후운동의 확장이든 인권운동의 새로운 의제 발굴 차원이든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다. 기후변화 회의론, 파국론, 방어적 기회론, 비판적 기회론, 기후위기의 정치화 등 다양한 기후담론 층위 속에서 정체성과 목표에 따라 자신에 맞는 진영을 구축하고 활동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행여 인정투쟁, 주도권 경쟁으로 빠져 역량을 소모하지 않는지, ‘시민’이라는 더 큰 연대를 잇고 활동가만의 치열한 운동이 되는 건 아닌지 경계하자.

<기후정의를 위한 새로운 연대>라고 제목 붙였지만 신묘한 아이디어가 내게 있을 리 만무하다. 인권·노동·교육·젠더·변혁운동 등 다양하게 터져 나오는 요구들을 기존의 기후운동 연대를 확장하여 함께 할지, 다름을 인정하고 색깔에 맞는 새로운 연대를 출범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부산의 운동역량과 속도, 맥락에 맞는 방안을 찾아보자.

▣ 참고자료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시행 2022. 8. 5.] [부산광역시조례 제6733호, 2022. 8. 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 시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시는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시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⑤ 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범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시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지역비전으로 한다.

- ② 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③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도시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목표 및 계획의 이행현황 점검)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3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9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시장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는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인 경제부시장이나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⑩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군의 기본계획 협력 및 의견 제시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12조제3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신청을 받아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등

제16조(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신·재생에너지 전환)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도로·교통·항만 등 공공기반 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의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8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시장은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 또는 임차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탄소흡수원 확대)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22조(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훼손에 종합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도시열섬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시장은 도시열섬 현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열섬 관측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지역 물관리 사업)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정의로운전환 등) ① 시장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 구역이 법 제48조제1항의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이하 “전환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제27조(협동조합의 활성화)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녹색기술 녹색산업 등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육성·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거나 에너지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건축물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하여 에너지 절감, 녹색기술의 개발·보급, 녹색기술·녹색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촉진·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육성·지원 과정에서 산업분야별 노동력의 원활한 이동·전환을 촉진하고 시민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⑥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기업과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천연대가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0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시장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와 각 호의 제도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정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감하는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2. 승용·승합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3. 전자 영수증 사용, 빈용기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 등 녹색생활 실천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4.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필요한 녹색활동, 관련 기술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제도
- ③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에 소속 공무원이 출선하여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자에 대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의 성과가 우수한 기업·민간단체 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1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외 도시,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 추진상황 점검 지원
2. 적응대책의 수립·변경·시행, 추진상황 점검 지원
3. 시의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4.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참여와 인식제고 방안 발굴 및 시행 지원
5. 관련 교육, 홍보사업 지원
6. 국내·외 도시 간 탄소중립 협력사업 지원
7. 지역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등
8. 수송, 건물, 폐기물, 농축수산 등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 모델의 개발
9.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과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 증진 활동 지원
10. 시의 탄소중립정책 추진역량 강화사업 지원
11.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 작성 지원
12. 구·군의 기본계획,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대한 협력 및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33조(탄소중립 지원센터 대상기관) 시장이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중 시행령 제6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 기관·단체로 한다.

1. 시 소속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제34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환경물정책실장으로 한다.<개정 2022.8.5.>

제6장 보칙

제35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 시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기후위기대응 시책 또는 사업 등에 소요되는 행정상·재정상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는 설비 등에 투자하는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구·군, 시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등 국제협력 사업 시행,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부칙 <2022.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부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2. 「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에 따른 계획, 지원,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적용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감축목표를 최초로 수립할 때의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하고 기준연도는 2018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9조에 따른 위원회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2.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8조에 따른 2030엑스포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2) 생략

이 행사는 국가인권위원회 '2022년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으로 진행합니다.